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6조제3항 및 제 29조제2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법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혜 진)